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12. 18 선고 2023가단117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라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한만우

변 론 종 결 2023. 11. 7.

판 결 선 고 2023. 12. 18.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 같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 및 같은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 중 각 7/19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3. 2.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① “C는 원고에게 26,106,331원 및 그 중 21,655,123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47267) 및 ② “C는 원고에게 14,799,343원 및 그 중

14,284,428원에 대하여 2018.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64002)을 각 신청하였고(이하 위 각 지급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8. 6. 29. 및 2018. 8. 31.에 각 확정되었다.

나. 망 D(2022. 8.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전부, 같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같은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의 7/49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피고, C, E, F이 있다(상속지분 각 1/4).

다. 피고, C 및 위 나머지 상속인들은 2023.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2. 6.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2. 6. 24. 접수 제13426호,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판결금 채무 및 G조합자산관리에 대한 채무 4,504,000원(2019. 6. 24. 연체 발생)¹⁾, H에

대한 채무 19,932,000원(2017. 11. 27. 연체 발생), I에 대한 채무 19,951,000원(2017. 10. 16.)

등이 존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3)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앞서 인정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의 법정상속분은 1/4이고,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 자신의 위와 같은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C는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망인이 C의 처인 K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있고, 피고가 4남매의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부양하였으며, C의 결혼 비용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 E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C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한 것인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피고는 당시 선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여분 등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피고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주장과 같은 특별수익을 받았거나 망인 재산의 유지·보존에 특별히 기여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기여분 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²⁾.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669 판결 참조), 피고와 C가 형제지간인 점, 피고 및 C의 이 사건 분할협의서상 주소 역시 동일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1/43)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승

별지

- 1) C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3. 7. 21. 이 부분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임(을 제4호증)
- 2)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러하다(이하 같음).
- 3) 부동산별 구체적인 지분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음